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선갑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, 동료 위원님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
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
김인제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안 설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
생각합니다.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현행 조례 제50조제6항은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
시정질문 처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,
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따로 처리 결과 보고를 하는 규정이
없어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 결과 파악이 어렵습니다.
따라서 시장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

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.

-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, 아무쪼록 운영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- 감사합니다.